

재생아스콘 관련 정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Proposal for Effectiveness Security of Policy related Recycled Asphalt Concrete

글 | 박정호* / 한국건설자원협회 기획조정실장

(Park, jeong-ho / Korea Recycled Construction Resource Association, 113-3 Panpo-dong, Seocho-gu, Seoul, Korea)

1. 서언

2007년도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발생량(약 810만 톤)은 같은 해 신재아스콘 생산량(약 2,980만 톤)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6월 9일 공공기관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이 공포되면서 동 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2010년 6월부터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의무사용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배출되어 순환골재로 생산, 대부분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에 혼합 사용되거나 성토용, 복토용 등 저급용도로 활용되었다.

2007년도 환경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발생량(약 810만 톤)의 1.9%만 재생아스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활용가치가 높고, 무분별하게 사용 시 토양오염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적정관리와 재활용은 시대적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09년 7월부터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처리하여 생산된 순환골재는 성토용, 복토용으로의 사용을 금지하고, 도로공사용 또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용으로 활용용도를 제한하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은 ‘예산절감,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키 위하여 2009년 6월부터 재생아스팔트콘



<사진 1>도로공사에서의 폐아스콘 절취



<사진 2>발생된 폐아스콘

크리트의 의무사용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공급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고부가가치 재활용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적정 처리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활용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의 개발과 시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E-mail : redo2000@korea.com

2. 폐아스콘 발생 현황 및 관련 정책·제도·시책

2.1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발생 및 재활용 현황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연간 발생량은 2007년 기준으로 약 810만 톤으로 건설폐기물 총 발생량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98%가 성·복토용으로 재활용되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는 약 15만 톤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아스팔트가 포함되어 있어 재활용가치가 높아 이미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사용율이 7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간 국내에서는 정책부재, 인식부족, 기술투자 미흡 등의 영향으로 사용율이 1.9%로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유가 상승과 맞물려 아스팔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적절한 재활용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표 1> 폐아스콘 재활용 현황('07.12월말)

발생량 (천톤/년)	매립량 (천톤/년)	재활용량(천톤/년)		
		소계	재생아스콘	도로보조기층용 성·복토용 등
8,094	3	8,091(100%)	150(1.9%)	7,941(98.1%)

<표 2> 외국의 재생아스콘 점유비율('06년 기준)

(단위 : %)

일본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벨기에	한국
73.1	65	60	53	36	1.9

※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율 : 재생아스콘/아스콘×100

<표 3> 재생아스콘 생산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계	수도권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
73	22	4	4	12	3	5	17	5	1

선진 외국과 일본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을 해 보면, 우선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분리배출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생자원에 대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활용 용도를 개발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행정보고의 의무화와 사회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시스템이 정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업체(중간처리업, 재활용신고자 등)는 2009년 4월말 현재 73개소이며, 수도권, 대전, 대구·경북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2007년 말 기준 발생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약 810만 톤)의 전량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생산할 경우 약 27%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2008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실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량은 약 88만 톤으로 전체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량(약 28백만 톤/년)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사용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의 사용량은 통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실제 순환골재 사용량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설비는 <사진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생산방식에 따라 가열방식, 상온방식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가열방식의 경우 폐아



(a) 상온재생아스콘 생산시스템



(b) 가열재생아스콘 생산시스템

<사진 3> 재생아스콘 생산시스템 전경

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를 30%까지 혼합할 수 있으며, 상온방식의 경우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100%까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처리와 관련하여 건설신기술을 득한 업체는 7개 업체이며, GR인증을 받은 업체는 26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12개('2009년 6월 9일 기준)이다.

2.2 관련 정책·제도·시책 현황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배출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특별한 관리기준이 없어 단순하게 순환골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재활용용도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원료 보다는 대부분 도로보조기층용, 성토용, 복토용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토양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관련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기준, 규격 등이 부재하거나 상충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것도 원인이지만,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 불안, 대량 생산을 위한 기술 미흡, 생산시설 및 기술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었음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재생자원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공사현장으로부터 40km 및 운반시간 1.5시간 범위 내에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이 있을 때에는 경제성에 관계없이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결과 2006년을 기준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률을 76%까지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12월 건폐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도록 강제규정을 마련하였으며(시행규칙 별표1의2 바목), 입도가 40mm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직접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시행규칙 별표1의2 사목)

또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처리하여 생산된 순환골재는 성토, 복토용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도로공사용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용에 한하여 사용토록 강제화하였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허가기준을 세분화하여 '재생아스콘 전문생산업'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부지면적은 2,000㎡ 이상, 파쇄시설은 1일 처리능력 400톤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생산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였다.

<표 4> 관련 정책·제도 현황

구 분	주요내용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정의	건폐법 제2조 제8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의무사용	건폐법 제38조
페아스콘 순환골재의 사용용도는 도로공사용으로 한정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단서 ('09.6.25일 시행) ⇒ 최초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
페아스콘은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 의무화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바목 ('09.6.25일 시행) ⇒ 최초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부터 적용
입도가 40mm이하로 절삭(切削)되어 배출된 페아스콘은 재생아스콘으로 직접 사용 가능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사목 ('08.12.30일 시행)
중간처리업체 중 '재생아스콘 전문생산업' 허가기준 마련 - 부지(3,300㎡ → 2,000㎡), 파쇄 시설(600톤/일 → 400톤/일)	건폐법 시행규칙 별표2 ('08.12.30일 시행)

또한 2009년 6월 9일 공포된 건폐법 개정령에서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정의를 순환골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법 제2조 제8호)하고,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의무사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 규정에 대한 본격적인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인 2010년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2007~2011)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동 기본계획에서는 페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분리배출토록 제도화하고, 절삭된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전량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위와 같이 법령에서 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됨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자발적인 재활용 활성화 시책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5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환경기초시설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활용이 용이한 대상 공사를 적극 개발하여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설계에 우선 반영토록 권고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지자체 및 공기업 등 발주기관과 관련 협회 등 관계기관이 재생아스콘 자율적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활용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표 5〉 주요 공공기관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활성화 대책

기관	조치내용
환경부 ⇒ 지자체 및 공공기관 ('09.5.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초시설(하수도, 분뇨처리, 폐수종말, 공공처리시설) 또는 공사(도로포장, 주차장, 광장, 골작복구 포장) 등에 재생아스콘 사용 협조요청 ※ 국고지원 예산편성 지침에도 반영 계획 표명
경기도 ('09.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부터 31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재생아스콘을 모두 적용토록 할 예정임 ('11년까지 15%로 확대) - 재생아스콘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에 위탁 추진
인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5월부터 재생아스콘 10% 사용, '11년까지 30%까지 확대 - 재생아스콘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에 위탁 추진
서울시 ('08.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청, 산하기관, 사업소, 25개 자치구 시행 공사에서 재생아스콘 10% 이상 의무 사용

또한 경기도에서도 2010년부터 31개 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 재생아스콘을 모두 적용토록 할 예정이고, 인천시는 2011년까지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도 지난 2008년 2월부터 분청, 산하기관, 사업소, 25개 자치구 시행 공사에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10% 이상 의무 사용토록하는 예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3.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앞서 일본을 비롯한 선진 외국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재활용율이 높은 이유는 페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분리배출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고, 재생자원에 대한 사용의무화, 다양한 활용 용도를 개발 및 홍보, 행정보고의 의무화, 사회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시스템의 정착 등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용 기피,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기피, 국가적인 재활용정책의 미흡함, 단순 용도로서의 재활용, 재활용제품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를 제도적, 기술적, 사회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하였음을 꼽을 수 있다.

페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재활용이 용이한 성상의 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과 혼합하여 배출, 수집·운반, 중간 처리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12월 개정된 건폐법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배출된 것은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를 따로 하도록 강제화한 바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배출자와 처리자의 역할이 주요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자발적 관리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건폐법의 경우 그간 ‘순환골재’ 위주의 수요확대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수요 확대 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둘째,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용어 정의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건설폐재류를 이용한 재활용제품의 경우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주원료 생산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으나, 기술 여건 상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에 대한 원료사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일부만 사용하여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분류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GR기준의 혼합율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의 사용량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셋째,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KS기준이 부재하다.

현재 KS F 2369(도로보수용 상온역청 혼합물)과 KS F 2349(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천연골재를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규정한 것으로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기준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활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술·시설 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그 역사는 매우 짧은 가운데 국가차원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며, 업체별로도 기술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1일 생산능력이 3,000톤(플랜트 가열재생공법) 이상인 업체에서부터 10톤(현장가열표층 재생공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고 있는 등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유럽보다 기술수준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다.

또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생산하기 쉬운 절삭(切削)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비해 괴(덩어리)형태의 페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의 재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점으로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제조되더라도 “재생제품”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수요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바, 공공기관에서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사용을 꺼려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구매 시 신재 아스팔트콘크리트(KS인증제품) 위주로 발주하고 있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입찰참여 자체가 차단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생산 기술·시설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4. 페아스팔트콘크리트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

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페아스팔트콘크리트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량 이상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가 사용된 것으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가열방식으로 생산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도로 표층용에 사용하는 경우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약 30%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도로기층용의 경우 약 50%까지 활용하여도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GR인증 대상 품질규격에서는 순환골재 혼입량을 25%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로 도로기층용도로 사용되는 상온방식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의 100%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정의 기준은 용도별로 표층용과 기층용으로 구

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층용의 경우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로서 순환골재 사용율을 제한하지 말고, 표층용의 경우 최소 50%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하여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도별로 일정량 이하로 사용된 것은 재활용제품으로 구분하지 말고 신재아스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 경우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활용용도에 대한 품질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신재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KS 준 등은 마련되어 있지만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KS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활용용도가 도로공사(기층 및 표층 등)부터 주차장, 공장용지 포장 등 까지 다양하므로 각 활용용도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품질에 대한 확실성을 주어야 하며, 고품질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을 위한 최적 배합·설계 기준의 제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도로공사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GR기준을 보완하여 주차장, 광장,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사용이 원활하고 도로용보다는 보다 낮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용도의 규격을 신설하여 적용하게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우선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도 개발이 필요하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수요처 확대를 위해서는 도로공사 표층용과 같이 고품질이 요구되는 용도를 우선하여 의무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시설여건을 감안하여 품질확보가 용이하고 시공 상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도로기층용 및 공원·광장·공장부지 포장, 농로 표토용, 하수관거 설치 후 도로복구용, 주차장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의무사용토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의무사용 제도의 시행 시 생산자의 기본요건으로서 KS, GR, 환경마크인증, 순환골재 품질인증 등을 받은 경우로 함으로써 공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방식에 대하여 업계

의 자발적인 시설투자과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활용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고품질 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투자과 대량생산 기술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순환골재의 사용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플랜트 개발, 고품질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을 위한 재생첨가제의 개발도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또는 재생제품에 대한 원활한 수요처 확보 및 의무사용제도의 활성화가 주요 수단이 될 것이다.

다섯째, 순환골재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 품질 및 수급과 관련된 유통기지와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재생아스콘 및 페아스콘 순환골재에 대한 판매, 공급에 대한 유통구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활성화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통기지와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장형성과정에서 과열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는 생산방식에 따라 가열방식과 상온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시장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정의에 대한 업계 간 논쟁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기술에 대한 논쟁과 관련 기술에 대한 헛뜯기 등의 논쟁은 정책수요자들에게 자칫 업계의 이익을 위한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며, 향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만 유발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사용촉진을 위해서는 조속히 관련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생산방식에 대한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5. 결론

2009년 7월부터 페아스팔트콘크리트를 고부가가치 용도로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으며, 2010년 6월부터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의무사용까지 확대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에서도 재생아

스팔트콘크리트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산업 인프라, 수급 및 기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등을 통한 품질확보에 매진하는 등 사용자에게 재생제품이라는 막연한 불신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여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가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06.9
2. 환경부,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2007 ~ 2011)
3.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페아스콘을 활용한 재생아스콘의 특성평가 연구, 2001
4. 국립환경연구원, 건설폐기물의 관리개선방안 연구, 2003
5. 명지전문대학, 폐콘크리트 재생골재를 이용한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안), 2002
6. 건설교통부, 건설폐기물 리사이클의 품질기준 및 촉진 방안, 2002
7. 이수철,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재활용에 관한 전망과 정책적 과제, 주택도시, 대한주택공사, 2004 겨울호, pp.7-21
8. 산업자원부, 산업폐부산물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방안 전략도출, 2003.1